

운영규정개요

I. 기본정보

기관명	부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
설치일자	2015년 4월 16일
소재지	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97(가좌동)
전화	032-583-2275
이용대상	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.

II.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1. 이용정원 :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.
2. 이용자 모집방법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,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대상자 발굴, 지인소개,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, 지역 노인요양병원 및 시설의 연계 및 홍보, 그 외 합법적인 홍보 등으로 모집한다.

III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계약목적	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급여계약	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5,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감경조건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 -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는 정해진 %를 경감한다. - 등급이 없는 수급자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한다. ② 급여비용의 산정은 월 이용료 부담액 운영규정 <별표1>을 참조한다.
계약기간	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,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한다. ②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면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계약해지	① 대상자가 계약이 만료되거나 타 기관으로 이전했을 경우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⑤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방문하여 안내했으나 해결이 안될 때
신원인수인 권리	① 이용자의 건강상태, 신변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의 만족도 조사, 방문상담 등으로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

신원인수인 의무	① 이용자에게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③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
배상책임 보험	① 센터의 요양요원이 서비스 제공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해 수급자의 신체적인 피해 (부상이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)가 발생했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(상해보험 청구)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 회의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한다. ③ 서비스 실시 중에 요양요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④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 - 재가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-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센터에 근무하시는 전문직업인이 전문직업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업무상의 부주의, 태만 또는 실수로 제3자에게 신체적/물질적 손해를 입힌 경우, 그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보험인 “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(재가)Ⅱ 가입을 의무화한다.
손해배상 책임보험	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 “보험가입 의무”에 따라 기관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 ② 복지시설(피공제자)이 공제가입증서 상의 담보 지역 내에서 공제보험 가입기간 중 발생한 특약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보험인 “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” 가입을 의무화한다.

IV.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

운영규정 참조	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음.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